[별지 제3호 서식]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기간제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 채용 공고
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- 900호

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3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채용 개요

□ 채용분야

채용 분야	채용예정 인원	근무지	담당업무
법률전문위원 (변호사(기간제)) *육아휴직 대체 (근무기간: 채용시~'27.12.31.)	1명	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◦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수행 ◦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제·개정 및 법령 해석 지원 ◦기타 소속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

♠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최초 상기의 조건으로 선발하되, 회사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

□ 응시자격

구분	응시자격
법률전문위원 (변호사(기간제)) *육아휴직 대체	○ **변호사 (「변호사법」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)** - 변호사 자격증, 변호사시험 합격 증명서, 사법연수원 수료증 중 1개 제출 가능자

2. 근무 조건

○ **신분 : 기간제근로자** (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)

○ **근무기관 :** 보건복지부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)

○ **근무(계약)기간 :** 계약체결 시 ~ 2027. 12. 31. 까지(육아휴직 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)

※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"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기간"에 포함됨

연번	구분	내용
1	근무형태	○ 전일제 근무 ○ 근무요일 : 월 ~ 금요일
2	근무시간	○ 적용기준 : 1일 8시간, 1주 40시간 ○ 근무시간 : 09:00부터 18:00까지 ○ 휴게시간 : 12:00부터 13:00까지(점심시간)
3	임금수준	○ 기본급 : **월 400만원 상당** (세전기준, 4대보험 본인부담액 포함) ○ 정액급식비, 명절상여금 등은 계약에 따라 별도 지급 ○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○ 4대보험 가입(개인별 가입연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
♠ 근로조건 및 보수액은 채용계약 시 최종 확정함

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, 근무요일은 회사 운영여건 및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

♠ 임금수준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, 예산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♠ 기타 복지후생 등의 사항은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3. 전형단계 및 일정

채용공고 ⇒ 원서접수 ⇒ 서류전형 ⇒ 면접전형 ⇒ 최종합격자 결정

구분	일정	비고
i) 채용공고	'26. 11. 23. ~ 12. 4.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게시
ii) 응시원서접수	공고기간과 같음	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
iii) 서류합격자 발표	'26. 12월 2주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
iv) 면접시험	'26. 12월 3주	장소 및 시간 합격자 별도 통보
v)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	'26. 12월 4주	
vi) 최종합격자 발표	'26. 12월 말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vii) 신원조회 및 자격사실검증 등	'26. 12월 말 ~ '27. 1월 초	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
viii) 최종 임용 예정일	'27. 1월 중	보건복지부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

4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 방법

○ **(원서접수 기간) '26. 11. 23. ~ 12. 4.**

○ **(접수처)**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○ **(접수 방법)** 접수처에 ❶우편(등기) 접수, ❷직접 제출 또는 ❸이메일 접수

❶ 주소 : 우)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※ 우편접수 시 겉봉에 「**보건복지부 법률전문위원 지원서 재중**」 반드시 명기

❷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

❸ 우편·이메일접수는 **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**

※ 이메일의 경우, **khs4562@korea.kr**로 송부 후 **☎044-202-2278**로 확인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법률전문위원 (변호사(기간제)) *육아휴직 대체	**<1차 서류전형>** ○ **변호사 자격증, 변호사시험 합격 증명서, 사법연수원 수료증 중 1개** ○ **응시원서 (붙임1)**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4호서식) ○ **입사지원서 (붙임2)**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5호서식) ○ **자기소개서 (붙임3)**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6호서식) ○ **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(붙임4)**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14~16호서식) **<2차 면접전형>** ※ 면접 시 반드시 지참 ○ **성적증명서 1부** ※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: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(변호사 시험 성적표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) 사법연수원 수료자 :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○ **경력증명서 각 1부** (해당자에 한함) ○ **기타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부** (해당자에 한함) ○ **주민등록초본 1부** (출신지 미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○ **가점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** (가점 항목당 해당자에 한함)

5. 가점사항 및 결격사항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, 제26조)

□ 가점 사항 (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 기준)

○ 아래 가점 사항이 있을 경우 **입사지원서(붙임2)에 체크하여 제출**

항목	내 용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~10% * 가장 유리한 1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함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* 최대 1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가점 적용함

※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

※ **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** 단,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.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합산할 수 있고, 가점의 총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를 초과할 수 없음 (법정가점에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
※ 다만, 서류전형 적부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최종 합격예정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자가 없을 수 있음

□ 결격 사유 없을 것

○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○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공정채용기준 제26조)

<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>

❶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❷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❸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* 예시 :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6. 채용방법

□ 서류전형

○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
○ 단,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*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

* 서류전형기준(100) : 지원분야경력(20), 지원분야적합성(80), 기타 가·감점
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, 법정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
○ 서류전형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hw.go.kr)에 공고, 면접 일시.장소는 개별 연락 예정

□ 면접전형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
○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가적 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상(10점), 중(6점), 하(2점)로 평가등급을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

○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, 법정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사회형평가점을 받은 자,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
○ 불합격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감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

□ 최종합격자 발표

○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hw.go.kr) 공고 및 개별 통보

○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(소수점 이하는 1명)에서 예비합격자 선정
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7. 유의사항

○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이를 반환하고, 위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다만, 채용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(전화, 전자우편주소 등)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, 채용관련 문서는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존됩니다.

○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,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, 기타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
○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, 합격 취소, 중도 퇴사, 채용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 채용을 위해 '자격요건'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합격예정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4호서식]
2. 입사지원서 1부 [별지 제5호서식]
3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6호서식]
4.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1부 [별지 제14~16호서식] 끝.